



수원지방법검찰청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공보담당관 제1차장검사 자맹기
전화 031-212-3131 / 팩스 031-210-4456

보도자료

2018. 1. 30.(화)

자료문의 : 공판송무부장실
전화번호 : 031-212-8676
주책임자 : 공판송무부장 이은강

수원지검, 국내 최초로 “비트코인 몰수” 판결을 이끌어 내다

- 압수된 216.12 비트코인 중 191.32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판결 선고 -

- 수원지방법검찰청(검사장 한찬식)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일(1. 30.) 압수된 비트코인 대부분(191.32 비트코인, 1. 30. 기준 약 25억 원)에 대한 몰수 판결을 이끌어 내었음
 - 수원지검은 1심 판결 선고 직후 공판송무부장(부장검사 이은강)을 팀장으로 한 「비트코인 환수팀」을 구성하는 한편,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음
 - 수원지검 비트코인 환수팀은, 비트코인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및 판결, 사례 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상 몰수제도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트코인 몰수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·입증하였고,
 -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, 자체적으로 고안해 낸 비트코인 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압수된 비트코인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임을 명확히 특정하였음
- 이번 사례는 수원지방법검찰청과 대검찰청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 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(Leading Case)를 이끌어 낸 것으로,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실현한 것임
- 수원지검은 상고심에서도 몰수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추징금 확보를 위해 일부 몰수 되지 아니한 비트코인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임

1

사건의 개요

●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은 2014. 5.경부터 2017. 4.경까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·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·상영하고,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,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 [아동·청소년의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, 국민체육진흥법위반, 도박개장방조, 전자금융거래법위반]

● 비트코인 압수 경위 및 방법

-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(약 122만 명)로부터 음란물 다운로드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지갑(비트코인 거래 생성 프로그램)을 임의제출 하였음
- 이에 경찰은 비트코인 지갑을 새로이 개설한 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216.1249474 비트코인을 새로이 개설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후 이를 보관송치 하였음

2 재판 진행 경과

- 2017. 5. 11. 구속 기소
- 2017. 9. 8. 1심 선고(수원지법 제9단독)
 - ※ 구형 : 징역 5년, 휴대폰 및 비트코인 몰수, 추징 1,469,832,000원
 - ※ 선고 : 징역 1년 6월, 휴대폰 등 일부 몰수, 추징 340,000,000원
 - ※ 비트코인의 경우, 「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 중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추징함이 상당하나, ②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므로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.」고 판시하였음
- 2017. 9. 11. 피고인 항소(양형부당)
- 2017. 9. 13. 검찰 항소(사실오인, 법리오해, 양형부당)
- 2017. 9. 27. ~ 2018. 1. 26.
대검찰청 분석보고서 및 해외 몰수 판결 사례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
비트코인 몰수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찰의견서, 추징액 산정에 대한 구형의견서 등 제출
- 2018. 1. 30. 항소심 선고(수원지법 제8항소부)
 - ※ 선고 : 징역 1년 6월, 휴대폰 및 압수된 216.1249474 비트코인 중 191.3233 3418 비트코인 몰수, 추징 695,871,960원

- ※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재산은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함
- ※ 한편,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비트코인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임

3 항소심에서의 검찰 대응

▣ 비트코인 환수팀 구성 및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
- 수원지검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공판송무부장을 팀장으로 한 「비트코인 환수팀」을 구성하여 항소심 공판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음
- 한편,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실시간으로 공판진행 상황 및 비트코인 분석 경과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

▣ 수원지검 비트코인 환수팀의 법리검토 등

- 세계 각국의 입법례 및 판결, 사례 수집
 - 미국의 경우, 뉴욕주 지방법원(Southern District of New York)은 이미 2014년도에 United States of America v. Ross William Ulbricht 판결(일명 실크로드 사건)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수사당국은 판결 선고 후 경매를 통해 그 범죄수익을 국고귀속 하기도 하였음

- 뿐만 아니라 호주, 프랑스, 독일, 불가리아 등에서도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하였으며, 범죄수익과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트코인을 압수한 영국, 인도의 기사도 확인되었음

※ 그 밖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진 스웨덴의 사례 등 수 십여 개의 사례를 수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범죄수익으로서의 비트코인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음

● 국내법상 몰수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(비트코인 몰수의 적정성)

- 이 사건 비트코인의 몰수는 형법 제48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임

- 압수된 비트코인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하고,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비트코인 추적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취득한 수익이라는 점을 증명하였음

- 한편, 형법 제48조 제3항은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역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상 몰수제도에 의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음

● 비트코인 몰수의 필요성 소명

- 한편, 만일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몰수가 아닌 추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, 재판 선고 후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추징 집행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그대로

향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

■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비트코인 추적

● 한편,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안해 낸 비트코인 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압수된 비트코인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명확히 특정하였음

● 압수된 비트코인과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의 DB를 통해 확보된 7,304개의 비트코인 주소(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이체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함)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

● 분석 결과, 총 7,304개의 비트코인 주소 중 7,297개의 비트코인 주소는 압수된 비트코인의 주소와 음란물 사이트 DB에 저장된 비트코인 주소가 명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

4 판결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● 이번 사례는 수원지방법검찰청과 대검찰청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리딩케이스(Leading Case)를 이끌어 낸 것으로,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실현한 것임

● 수원지검은 상고심에서도 몰수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, 추징금 확보를 위해 몰수되지 아니한 비트코인에 대해 추정보전을 청구할 예정임 